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이 가이드라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 일반사항

# 01

- |                       |    |
|-----------------------|----|
|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 06 |
| 2. 용어 정의 및 해석         | 09 |
| [붙임] 공중이용시설 범위        |    |



##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 02

- |                               |    |
|-------------------------------|----|
|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 32 |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3 |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74 |
|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78 |
|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



##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 03

- |                        |     |
|------------------------|-----|
| 1. 도로 분야(국도·고속국도 등)    | 82  |
| 2. 철도 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 93  |
| 3. 항공 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 109 |
| 4. 건축 분야(업무시설 등)       | 124 |
| 5. 기타 분야               | 133 |
| 6. 중대시민재해 사례(위반행위별)    | 134 |





# 일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2. 용어 정의 및 해석

[붙임] 공중이용시설 범위



# I.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인력, 안전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 법 적용 시기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기관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법인 또는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또는 기관은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2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 ■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 분야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사항 및 적용 예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람



## II. 용어 정의 및 해석

### 1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1.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중대시민재해

#### ■ 재해 발생 요건 및 원인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또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때에 따라 중대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 유무는 해당 시설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물리적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 ■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 목적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법률 제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하였음(법률 제9조제2항)
-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률 제2조제3호)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대상물
공중 이용 시설	법 제2조제4호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의하는 19유형의 건축물
	법 제2조제4호나목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의하는 8종류의 시설물
	법 제2조제4호다목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법 제2조제4호라목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6개 유형(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주유소, 충전사업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공중 교통 수단	법 제2조제5호가목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법 제2조제5호나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법 제2조제5호다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법 제2조제5호라목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법 제2조제5호마목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참고사항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1명 이상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나 시간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 하나의 사업주, 법인·기관에서 관리·통제하는 재해 요인 중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2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1. 일반사항

### ■ 공중이용시설 개념

- 공중이용시설은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대상임

## ■ 공중이용시설 범위 (포함 또는 제외 대상)

☞ 공중이용시설의 세부 범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25~30p 참고

- 법률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중 대상의 **공중이용성,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대상(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별표3)
  - 또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의 ‘그 밖에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는 **준공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토목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으로 정함
-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이나 경영책임자등의 특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등은 제외함

분류	공중이용시설 대표 예시	소관부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중처법 시행령 별표2, 22~23p)	철도역사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2)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중처법 시행령 별표3, 24~26p)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21p)	노래연습장, PC방(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이에 준하는 시설 (21p)	주유소, 가스충전소(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6)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철도터널·철도교량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연장 20미터 이상)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 2. 국토교통 분야 공중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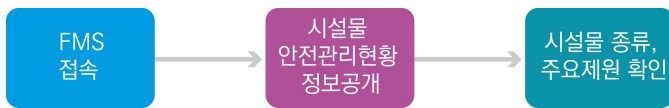
### ■ 공중이용시설의 분류

- 국토교통 분야의 공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 중인 제1·2종 시설물로, (시행령 별표3, 28~30p)
  - ①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②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③ 항만(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④ 댐 ⑤ 건축물 ⑥ 하천(하구둑, 제방, 보) ⑦ 상하수도 ⑧ 옹벽 및 절토사면
- 준공 후 10년이 지난 토목시설(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라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도로시설 또는 철도시설(①, ②)과 유사하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 중 지하역사 또는 각종 여객터미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축물(⑤)과 유사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마련한 사항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함

### 3. 대상 여부 확인방법

#### ■ 「시설물안전법」 상 제1·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 중이므로,
  - 제1·2종 시설물의 경우 FMS에서 시설물의 유형과 세부 분류, 주요 제원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

#### ■ 도로시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도로교량 등)

-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중인 도로대장에서 준공년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연면적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3 공중교통수단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1. 일반사항

### ■ 공중교통수단 개념

- 공중교통수단은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임
- 도시철도차량(법률 제2조제5호 가목), 철도차량(나목), 시외버스(다목), 여객선(라목), 운송용 항공기(마목)로 구분함

## 2. 국토교통 분야 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 분야의 공중교통수단은 ①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 ② 시외버스, ③ 운송용 항공기임

분류	세부대상
도시철도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li> <li>*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li> </ul>
철도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전용철도 제외)</li> <li>*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li> </ul>
시외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li> <li>* 운행계통을 정하고 중·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고급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이 해당</li> </ul>
운송용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li> <li>*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li> </ul>

## 4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1. 사업주 (개인사업주)

#### ■ 일반사항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이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 2. 경영책임자등

### ■ 일반사항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를 말함
    -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를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함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 ■ 공공부문 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괄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5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요건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도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도급계약서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사업주등의 지시권을 전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파견하였는지
  - 업무, 비상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여하는지
  -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사업 운영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개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도록 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임
- 종전 안전 법령이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를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특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등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자세히 안내함

☞ 경영책임자등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31p~79p 참고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재해”란 모든 형태의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한정된다고 보이며,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

## 붙임.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 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2)】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해당여부,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은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3)】**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 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 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산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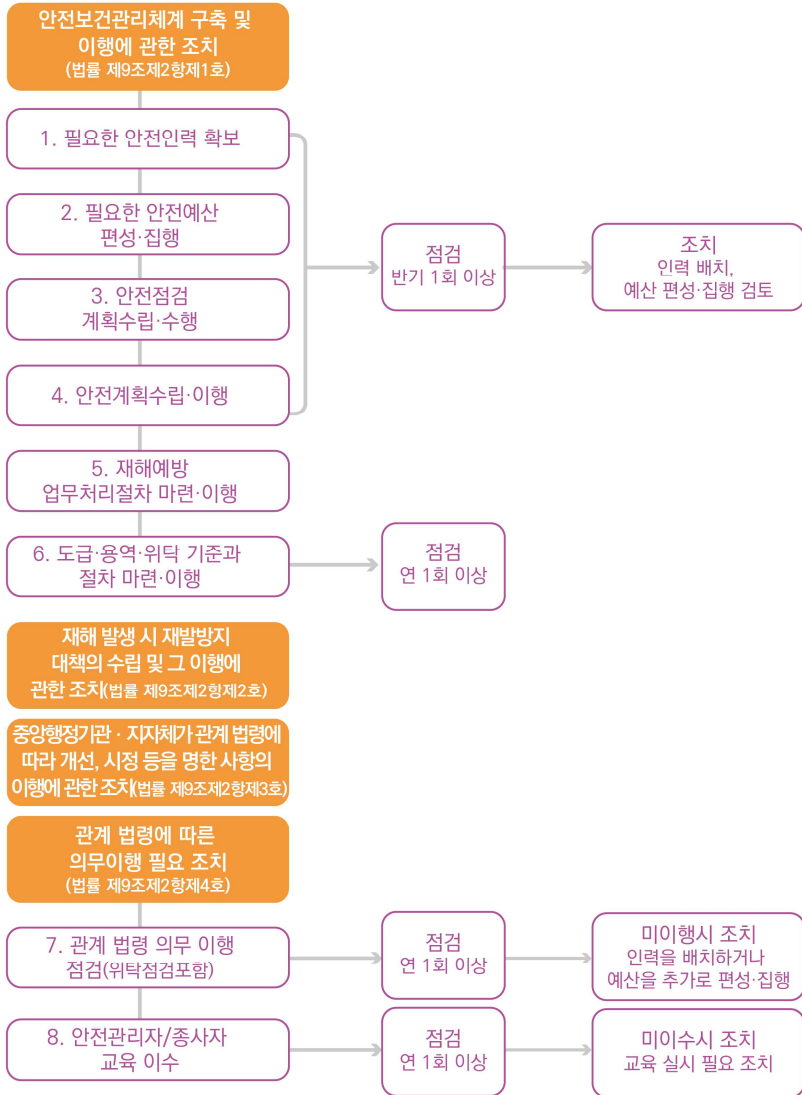
#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I.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를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 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기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 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②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③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등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 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추가로 설치된 부대시설, 공작물**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2.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①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도로 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시설물안전법
도로 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② 철도시설

- 철도교량, 철도터널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철도 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철도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철도역사, 대합실 등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철도 역시설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 ③ **공항시설**(여객터미널)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 ④ **항만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 시설물안전법, 항만법
- ⑤ **댐시설**(다목적, 발전용, 홍수전용댐 등) : 시설물안전법, 댐건설관리법, 저수지법
- ⑥ **건축물**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 관리법*

\*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

- ⑦ **하천시설**(하구둑, 제방·보) : 시설물안전법, 하천법
- ⑧ **상하수도시설** : 시설물안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 ⑨ **옹벽 및 절토사면** : 시설물안전법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시설물안전법
절토 사면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3.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①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 「철도안전법」
- ② 버스 분야(시외버스) :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 ③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 「항공안전법」

## 2 필요한 인력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 일반사항

### 인력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다만,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설서에서는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제시하도록 함
  - 경영책임자등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6호)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

### ■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업무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 ① **안전점검 업무** : 법률에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의 점검 업무
  -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② **보수·보강 업무**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점검 결과로 결함 등이 발견 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보수·보강 등의 업무
  -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
- ③ **안전조치 업무** :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업무



### 3. 안전계획의 이행<sup>(나목)</sup>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안전계획의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인력, 안전계획에 포함된 항목의 이행 여부와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필요 인력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편성함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인력 확보 참고지침>

시설분류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인력 확보 참고지침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 [별표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별표27]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건축물(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건축물(유기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 4.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 고시의 제정 목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이나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이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인력을 확보해야 할 대상 업무를 고시로 추가 규정함

※ 참고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호, 2022.01.24., 제정)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함**

- 경영책임자들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고시의 주요 내용 (인력 확보 업무)

#### ①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업무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고시로 규정함

#### ②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에서 대응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 요인 발견·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업무 수행인력'을 확보하도록 고시로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음

분야		유해 위험요인 예시	
교량	교면포장 및 데크 표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불량</li> <li>• 포장손상(A)</li> <li>• 신축이음 파손(B)</li> </ul>	
	난간/연석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A)</li> <li>• 누수로 인한 구조물 부식</li> <li>• 난간/연석 파손(B) 등</li> </ul>	
터널	노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불량</li> <li>• 포장손상(A, B)</li> </ul>	
	안전시설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호벽, 가드레일 손상 및 결함(A)</li> <li>• 고정부 손상 및 전도 우려(B) 등</li> </ul>	
건축물	안전시설, 구조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간 손상, 미설치(A)</li> <li>• 구조체 손상(B)</li> </ul>	
	내·외부 마감재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마감 손상으로 균열 발생(A)</li> <li>• 외부 마감재 손상(B)</li> </ul>	
철도 차량	부품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부품의 과도한 마모, 탈락 등</li> </ul>	-

### 3 필요한 예산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 일반사항

### ■ 예산 편성의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 다만,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안전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할 안전업무를 제시하도록 함
  - 경영책임자 등은 각 법인·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예산 편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시행령 제10조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계획된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6호)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

###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비용, 보수·보강 비용, 안전조치 비용, 인건비 등이 있음

- ① **안전점검 비용** : 법률에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② **보수·보강 비용**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점검의 결과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수행토록 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비용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 보강 업무
- ③ **안전조치 비용** :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비용
- ④ **인건비** :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 운영 비용  
※ 그 외에 법정 안전계획의 수립, 법정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음

## [ 안전·보건 예산 편성 항목 및 세부 내용 예시 ]

구분	필요예산 항목	세부 내용
안전계획 이행	안전점검 비용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용 (공중교통수단) 점검, 정비, 장비확보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비용	안전 인력 확보 및 유지 비용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비용	이행점검 결과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유해·위험 요인 점검 비용	이용자 측면에서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비용
	유해·위험 요인 신고시스템 운영비용	별도 신고시스템 운영시 시스템 운영비용(국민신문고 등 공통시스템 사용시 개별적으로 편성할 필요 없음)
	유해·위험 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에 필요한 비용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비용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 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
	대피훈련 시행 비용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 소요 비용 (1층 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비용	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 비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용역 비용(필요시), 재발방지대책 이행에 필요한 비용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비용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시설물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시설물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의무이행 점검 위탁 비용	연 1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위탁비용(외부 위탁 시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시설물별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

### 3.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안전계획의 이행 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4.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 고시의 제정 목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이나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이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인력을 확보해야 할 대 상업무를 고시로 추가 규정함

※ 참고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호, 2022.01.24., 제정)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을 꼭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 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고시의 주요 내용 (예산 확보 업무)

### ①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 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고시로 규정함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음

분야		유해·위험 요인 예시	
교량	교면포장 및 데크표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불량</li> <li>• 포장손상(A)</li> <li>• 신축이음 파손(B)</li> </ul>	 
	난간/연석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A)</li> <li>• 누수로 인한 구조물 부식</li> <li>• 난간/연석 파손(B)등</li> </ul>	 
터널	노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불량</li> <li>• 포장손상(A, B)</li> </ul>	 
	안전시설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호벽, 가드레일 손상 및 결함(A)</li> <li>• 고정부 손상 및 전도 우려(B) 등</li> </ul>	 
건축물	안전시설, 구조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간 손상, 미설치(A)</li> <li>• 구조체 손상(B)</li> </ul>	 
	내·외부 마감재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마감손상으로 균열 발생(A)</li> <li>• 외부 마감재 손상(B)</li> </ul>	 
철도 차량	부품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부품의 과도한 마모, 탈락 등</li> </ul>	-



②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 교량, 터널 분야 예시 :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예시 :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 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 교육 예시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조치 등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물품 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 안전 물품 예시 : 안전표지판, 안전삼각대, 비상탈출용망치, 안전경광봉 등
- 안전 장비 예시 : 차량 차체 진단장비, 철도차량 점검 특수 해머, 차량 수리·보수, 점검·교체 장비 등

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규정

##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와 주기는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등급,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 1. 개념

### ■ 안전점검의 정의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내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과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2.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 ① 철도

#### ○ 철도교량, 철도터널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연 3회 이상</li> </ul>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등급 : 3년에 1회 이상</li> <li>B·C등급 : 2년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1년에 1회 이상</li> </ul>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철도건설법」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시설별 별도 주기 결정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10년 경과 철도시설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 ○ 철도역사, 대합실 등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연 3회 이상</li> </ul>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li>B·C등급 : 3년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2년에 1회 이상</li> </ul>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 필요시

## ② 건축물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연 3회 이상</li> </ul>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li> </ul>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 필요시

- 그 외에 도로(도로교량, 도로터널), 항만,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필수안전점검으로 봄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연 3회 이상</li> </ul>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3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li> </ul>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 3.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 ① 철도(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5년 단위

#### ② 버스(시외버스)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 1년 단위(차령 8년 이하) • 6개월 단위(차령 8년 초과)

#### ③ 항공(운송용 항공기)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항공안전법」	제90조	안전운항체계 검사	• 운항시작 전

## 5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의 형식과 내용은 해당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 개념

###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바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안전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는 조건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상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는, 별도의 안전계획 작성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법령	안전계획	계획 내용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설계·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ul>
「철도안전법」	철도안전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li> <li>• 철도안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li> <li>•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안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li> </ul>

## ■ 안전계획 주요 포함내용

- 안전계획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재원과 유형,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그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대상에 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2. 안전계획 예시

※ 안전계획 예시는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① 하나의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표〉 형식의 간단한 안전계획

#### <안전계획 예시 : 단일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기관용>

00년 안전계획					
00기관, 00년 00월					
<b>1. 공중이용시설 개요</b>					
공중이용시설명		소유자		(사진대지)	
관리주체		준공년도			
소재지					
공중이용시설 현황(제원 등)					
<b>2.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b>					
안전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② 보수·보강 비용	• 시설의 안전과 정비·점검을 위한 장비 확보 비용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비용			
	③ 안전조치 비용	•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긴급안전조치, 이용제한 등 안전조치 등 비용			
	④ 인건비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⑤ 기타 비용	• 그 외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력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b>3. 00년 추진계획 및 점검</b>					
	구분	내용	추진 일정	예산 확보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유지관리	관리1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관리2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 ② 하나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표> 형식의 간단한 안전계획

### <안전계획 예시 : 단일 공중교통수단 운영·관리 기관용>

00년 안전계획					
00기관, 00년 00월					
1. 공중교통수단 개요					
공중교통수단명		소유자		(사진대지)	
관리주체		제작년도			
		승인년도			
소재지					
공중교통수단 현황(수량 등)					
2.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					
안전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② 보수·보강 비용	• 공중교통수단의 정비, 보수·보강, 부품 교체 등 비용			
	③ 안전조치 비용	•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긴급안전조치, 운행제한 등 안전조치 등 비용			
	④ 인건비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⑤ 기타 비용	• 그 외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력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3. 00년 추진계획 및 점검					
구분		내용	추진 일정	예산 확보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유지관리	관리1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관리2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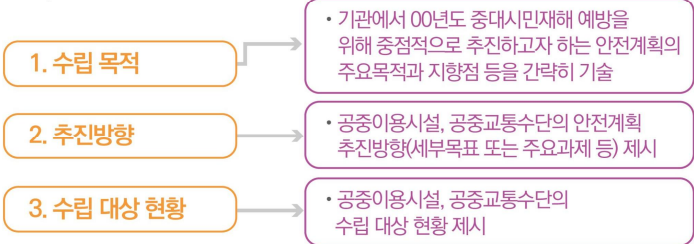
### ③ 다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 보고서 형식의 안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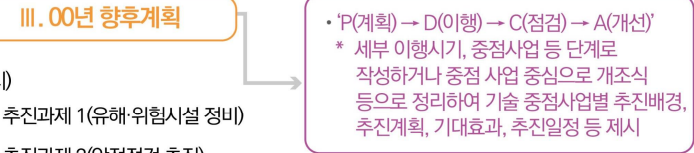
#### <안전계획 예시 : 다수 대중교통수단 운영·관리 기관용>

### 안전계획 목차(안)

#### I. 개요



#### II. 00년 안전관리현황 및 추진계획



(예시)

- 1 추진과제 1(유해·위험시설 정비)
- 2 추진과제 2(안전점검 추진)
- 3 추진과제 3(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행) 등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시설물 안전분야, 안전예산현황, 안전전담조직 및 역할, 안전인력현황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봄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주요내용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 국토교통부</li> <li>▪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제출</li> </ul>
↓	
추진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 국토교통부</li> <li>▪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li> </ul>

###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 예시>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 및 주요내용 예시	
1. 개요	- 법적 근거, 계획의 주요내용
2. 안전환경 변화와 전망	- 대내/외 안전환경 분석 - 철도사고 현황 분석
3. 안전 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	- 전년도 성과 분석 - 다음 연도 중점과제 도출
4.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 과제별 추진내용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li> <li>❖ 철도종사자 안전역량 강화</li> <li>❖ 철도차량 관리 체계화</li> <li>❖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 확충 및 개량</li> <li>❖ 철도 위기대응체계 개선</li> <li>❖ 철도안전 연구개발 강화</li> </ul>	
5. 투자계획 및 담당자	- 과제별 예산(안) - 과제별 담당자 지정

##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의 형식과 내용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경영책임자등이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매뉴얼 등을 마련토록 함

-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 또는 조치를 요구하여, 보수·보강이 적절히 수행됨으로써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임

-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봄

법령	업무처리절차	법 조항 내용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항공안전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고,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지속유지>

절 차	주 요 내 용
승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li> <li>▪ 비상대응계획,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li> </ul>
↓	
서류 및 현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요청서 통보(국토교통부 → 신청기관)</li> <li>▪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 → 국토교통부)</li> </ul>
↓	
안전관리체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증명서 발급(국토교통부 → 신청기관)</li> </ul>
↓	
안전관리체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li> </ul>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절 차	주 요 내 용
승인신청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등을 갖추어 신청(항공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li> </ul>
↓	
서류 및 현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요청서 통보 (국토교통부 → 항공운송사업자)</li> <li>▪ 조치결과서 제출 (항공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li> </ul>
↓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서 발급 (국토교통부 → 항공운송사업자)</li> </ul>
↓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유지</li> </ul>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내용	주요 내용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 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 2. 업무처리절차 예시

※ 업무처리절차 예시는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 ①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가목)

-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해빙기, 장마 기간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는 안전 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이용 안전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관찰**(수시점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점검·관찰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주요 유해·위험 요인 예시는 46p 참고



## ②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나목)

- 유해·위험 요인 신고 또는 조치 요구 시, 시설관리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유해·위험 요인이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들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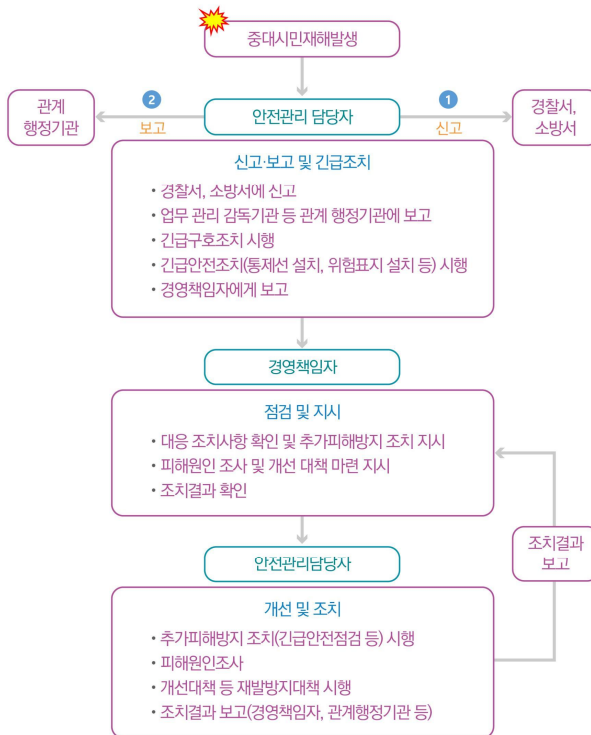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절차 예시>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방지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다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해야 함
- 경영책임자들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함
-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보고해야 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예시 >



- 교량·터널·비탈면·옹벽의 파손·붕괴 등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아래 대응절차 예시를 참고하여 대응절차를 수립할 수 있음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예시】

#### ■ (재해유형) 교량·터널·비탈면·옹벽의 파손·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 < 재해유형 예시 >

- ◆ (총괄) 시설물 붕괴·일부 탈락 등 훼손의 유형이 다양하고, 시설별 유형도 많아(교량의 경우 케이블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적인 형태로 예시
- ◆ (교량) 교량 파손·붕괴로 인한 차량 추락, 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피해
- ◆ (터널) 터널 파손·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제연팬 등 시설물 탈락에 의한 피해  
해저터널 침수로 인한 피해
- ◆ (비탈면·옹벽) 사면 또는 옹벽 파손·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 ■ (대응절차) ①위기상황 보고·전파 → ②초동조치 → ③위기수준 평가 → ④대응조치 → ⑤후속조치 순으로 구성(재난대응매뉴얼 준용)

- ①-1 (위기상황 보고·전파) 위기상황을 발견·접수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기관장,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전파
  - \* 사고개요(일시, 장소, 사고시설물, 사고유형), 인명피해 현황, 응급조치사항
- ①-2 (유관기관 전파) 소방서, 경찰서,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상급기관에도 보고
  -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부 본부 상황반장\*\* (소관과장) 및 담당자에게 보고·전파
    - \*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10명 또는 절벽자 10명 이상 발생
    - \*\* 교량·터널 ⇒ 도로시설안전과장 / 비탈면·옹벽 ⇒ 도로관리과장
- ② (초동조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초기대응반은 현장 출동하여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원\*\* 등 실시
  - \* 방재시설 가동, 비상방송 송출, VMS 표출, 사고차량 유해위험물질 탑재 여부 확인 등
  -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진입로 확보, 교통통제, 긴급대피 등
- ③ (자체상황판단회의 실시) 위기수준 평가\*, 대응조치 구성·운영 필요성, 필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위기수준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게 전파
  - \* 피해규모, 대응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경계" 이상 위기경보 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본부 상황반장 및 시설담당자에게 요청
- ④-1 (대응조치) 대응조치 구성·운영, 연락체계 유지, 사고수습상황 파악, 추가 필요 조치\*를 검토하고 조치 이행 또는 지시
  - \* 교통정보 제공, 추가 긴급안전조치, 사상자 인적사항 파악 등 피해자 지원대책 등
  - 대응상황은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통보(초기-중간-최종, 필요시 수시)
- ④-2 (시설물복구) 시설물 피해현황 파악, 긴급안전점검 또는 진단 실시, 사고분석 등을 통해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하여 보고
- ⑤ (후속조치) 시설물 긴급복구 실시, 상황종료시 관계기관에게 전파, 교통소통 재개 시행·홍보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여 보고
  -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재난대응매뉴얼 (도로터널\*, 해상교량, 특수교) 절차에 따름
  - \* 도로터널 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터널 외 도로재난에도 적용토록 규정

#### 4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라목)

-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시설물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비상 상황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훈련(비상대응계획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 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 계획의 수정,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다음은 도로분야, 철도분야 및 재난관계법령 등에 따른 대피훈련 예시임

#### 【도로분야 대피훈련】

- (훈련주관) 지방국토관리청
- (훈련시기) 교량, 터널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
- (참여기관) 국토소,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 훈련 시나리오, 참여필요성,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청이 참여범위 설정
- (훈련방식) 교량, 터널별 재해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자체점검·평가에 따른 미비점은 개선 조치
  - 국토청은 훈련계획 및 훈련결과를 본부 도시시설안전과로 보고

#### < 기관별 비상대비훈련 시행 절차 >

훈련주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참여기관	국토소, 국토안전관리원(교량), 터널위탁관리소(터널), 지자체, 유관기관 등
훈련시기	주관기관별 교량, 터널 각각 연 1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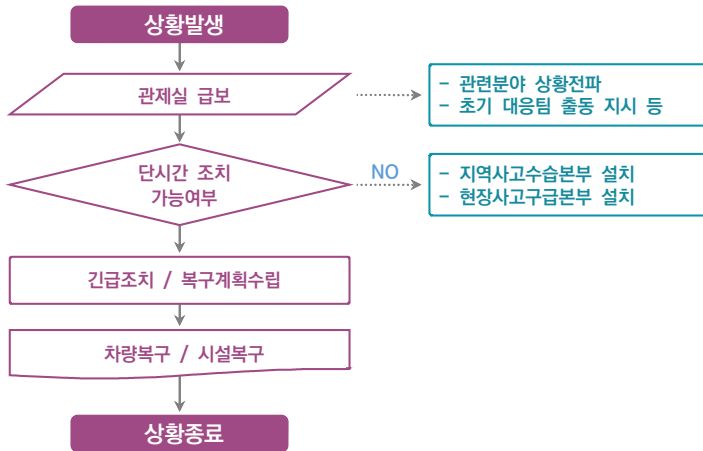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 자체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시기, 대상시설물, 훈련목표, 참여범위와 시나리오,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환류 방안 등 포함</li> <li>• 훈련계획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전파 및 초기상황 보고</li> <li>• 고립 차량, 국민 대피</li> <li>• 재난자원동원</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차년도 훈련계획 수립시 개선 필요사항 반영</li> <li>• 필요시 매뉴얼 개정</li> <li>• 훈련결과 보고</li> </ul>

※ 재난 관련 법령 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훈련 시 대피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같음

## 【철도분야 대피훈련】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충돌, 탈선 등)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 < 비상대응계획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예시 >



###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 예시】

법령	훈련 내용
재난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재난대응에 필요한 중요 역량의 실행과정 등 훈련)</li> <li>▪ (위기상황매뉴얼)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이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연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처계획)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자연재해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등 피해 감소를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비상대피계획, 위험지역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 필요사항 등</li> </ul>
초고층재난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테러훈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 포함)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li> </ul>

## 7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

※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는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1. 개념

### 주요 의무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두 사항을 마련 하도록 함
  - ① 수탁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 ②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 또한, 연 1회 이상 이 기준과 절차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를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운영 가능함
  - \*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
  - \*\* 평가항목별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을 평가할 수 있음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평가 당시에 평가항목이나 배점 가점 등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하여 입찰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함

### < 단계별 선정 기준 예시 >

단계	주안점	세부 내용
입찰	'도급사업(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적격수급업체 선정기준'의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li> <li>-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교육계획</li> <li>-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의 이력·경력·자격사항</li> <li>- 최근 재해 발생 현황 등</li> </ul> </li> <li>▪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작업)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li> </ul> </li> </ul>
계약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의 조치사항과 수급인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에 관한 내용 명시</li> </ul> </li> </ul>

## 평가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때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함

###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li> <li>•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li> </ul>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li> </ul>			
재해대응체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li> <li>•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li> <li>•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li> </ul>			
교육 및 훈련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li> <li>•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li> </ul>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li> <li>•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li> </ul>			

※ 시행령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주 등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부합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3.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평가기준

####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 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교량, 터널 분야 예시 :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예시 :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 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교육 예시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조치 등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 물품 예시 : 안전표지판, 안전삼각대, 비상탈출용망치, 안전경광봉 등
  - 안전 장비 예시 : 차량 차체 진단장비, 철도차량 점검 특수 해머, 차량 수리·보수 리프트 점검·교체 장비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철도역사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설치 등
- 안전 관련 설비 설치 예시 : 철도차량 정비·점검을 위한 작업설비 설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타법 사례: 안전관리비 계상>**

- 공연장 사례: 「공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객석 수와 관람 인원수에 따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 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 관리자 선임대상 건설 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예시>

- 일반국도에 공용 중인 터널은 관리인이 상주하여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를 두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순찰 및 점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간접원가 및 일반관리비(행정 운영 및 관리활동 부문의 인건비 및 경비) 등 용역 대가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23.2, 국토부))



### Ⅲ.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1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이행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행된 조치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기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 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②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③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등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봄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 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추가로 설치된 부대시설, 공작물** 등에 관해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일체로 보이나, 법 제9조 제2항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해당 법령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고 봄

## 2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 교육이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들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이 미이수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 ‘경영책임자들이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수된 교육에 대해 이수도록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 2. 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 교육의 예시

### ■ 공중이용시설

#### ○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점검 등 책임기술자 교육\*(「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신규교육 35시간 이상, 보수교육 매 5년, 7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교육\*(「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 업무수행(기본교육 35시간 이상)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관리자 전문교육(7시간 이상), 실무자 전문교육(14시간 이상), 신규교육+정기교육(매 2년)

### ■ 공중교통수단

####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안전법」)

- \* 안전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 정기교육(매월 2시간 이상)

#### ○ 항공종사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 교육\*(「항공안전법」)  
\* 위험물 취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승무원 교육\*(「항공안전법」)  
\* 최초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1번 이상

#### ○ 시외버스 종사자 안전교육

-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교통안전법」)  
\* 신규교육(16시간, 직무 시작 후 1회), 보수교육(8시간, 2년마다)



## IV.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1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3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개념

#### ■ 주요 규정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일차적으로 통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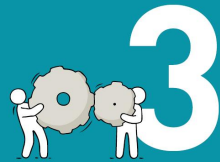


## 붙임.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이행사항		점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① 시설·설비 안전조치 업무 ② 시설·설비 유지보수 업무		안전인력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인력 업무점검 (문서화)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① 인건비 ② 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 안전점검비 ④ 기타비용		안전예산 편성·집행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예산 집행 점검 (문서화)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위험요인 도출/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위험요인 조치사항 확인 (문서화)	
4. 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인력확보 ② 안전점검 등 ③ 유지관리 ④ 안전예산 편성		안전계획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계획 이행점검 (문서화)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③ 재해발생시 대응 ④ 비상대피훈련		업무처리절차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업무처리절차 이행성과점검 (문서화)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①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절차 ② 재해예방비용 기준		도급 등 기준과 절차마련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도급 등 이행성과점검 (문서화)	
7.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① 의무이행사항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관계 법령 의무사항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관계 법령 이행사항점검 (문서화)	
8.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① 교육이수점검 ② 미이수시 조치		교육대상자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교육이수점검 (문서화)	





##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1. 도로 분야(국도·고속국도 등)
2. 철도 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3. 항공 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4. 하천 분야(하구둑·제방·보)
5. 건축 분야(업무시설 등)
6. 기타 분야



# 1. 도로 분야 (국도·고속국도 등)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1. 일반사항

####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터널과 도로교량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함

####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도로교량·도로터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교량·터널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조치(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함</li> </ul> </li> </ul>

## ■ 경영책임자들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들은 반기 1회 이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도로교량·터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내지 제13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관계 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연 3회 이상</li> </ul>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3년에 1회 이상(건축물 4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건축물 3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건축물 2년에 1회 이상)</li> </ul>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 6년에 1회 이상</li> <li>•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li> <li>•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바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4. 안전계획 수립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연 1회 이상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도로시설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바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도로교량·터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정기적(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조치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 6.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도로 교량·터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교육 관련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교육
  -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책임기술자)은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 도로분야 기관 사례 (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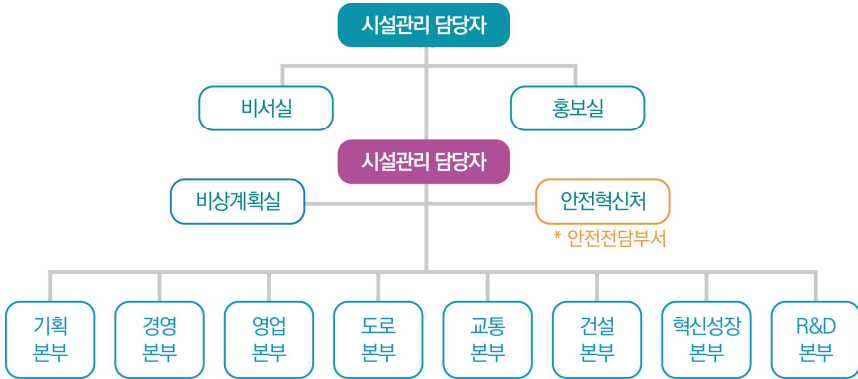
### 1. 기관 현황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2022년)

####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등
- **설립연도** 1969년

####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안전혁신처이며, 부사장 직속으로 운영



#### ■ 안전인력

- **인력강화** 안전전담 인력 강화 44명 ↑(144 → 188명)
- **본 사** 총괄·도로·건설 등 안전 기획 업무 수행 인력 보강(6명)
- **지역본부** 유지관리 및 건설관리 안전 전담 인력 보강 등(38명)

#### ■ 안전예산

- **안전보건예산** 집중투자 전년대비 824억원 ↑(1.54 → 1.62조원)
-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예산**(375억원 ↑)
-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관련 교육·홍보비용 등**(449억원 ↑)

## 2. 도로공사 재해예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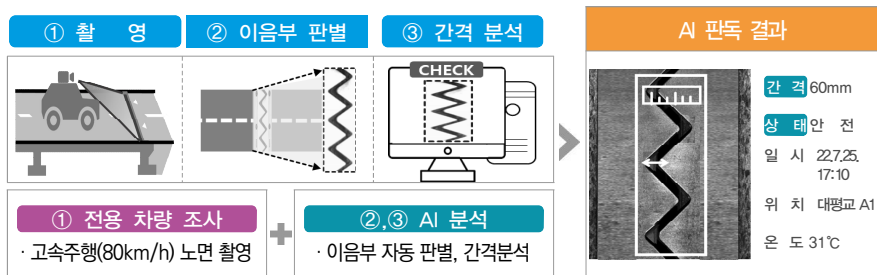
### ■ 사례1 : 드론의 계속되는 진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량점검

- **추진배경** 교량점검 특화드론의 활용 향상을 위하여 점검정확성과 효율성 고도화  
※ ('20년 특화드론 개발) 0.2mm 균열식별·돌풍저항 (드론점검팀) 드론 점검역량 보유인력 채용
- **추진내용** LiDAR, SLAM 등 위치 인식기술 적용으로 교량 하부 비행안정성 향상
- **추진성과** 균열 0.1mm<sup>등급평가 최소기준</sup>까지 식별확대, 점검시간 22% 단축<sup>27→21시간/교량</sup>

기 준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 하부 GPS 신호 끊김으로 비행 불안정 → 원거리촬영, 흐릿한 사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식기술 개발로 비행 안정성 확보 → 근접촬영, 선명한 사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이동 후 데이터 전송 처리</li> <li>• 배터리 한계(비행시간 20분/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이동식 드론 스테이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데이터 전송 처리</li> <li>• 배터리 자동 충전</li> </ul>

### ■ 사례2 : 교량 이음부 간격 자동분석으로 도로숯을 완벽 관리

- **추진배경** 폭염으로 콘크리트 팽창시 교량 이음부 협착 및 숯음 → 안전사고 위험 인력에 의존한 점검으로 점검·분석 시간 과다
- **추진내용** 전용 차량과 AI분석을 통한 교량 이음부 간격 분석 자동화
- **추진성과** 점검·분석시간 77%(52→12hr/지사) 단축, 숯음 우려 구간 사전조치<sup>(31개소)</sup>



※ 출처 : 2022년 정부경영평가보고서(2022, 한국도로공사)

### ■ 사례3 :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혁신의 바람, 케이블 프리 제트팬

- **추진배경** 터널 화재로 전선 훼손, 전력공급 중단 시 제트팬 미가동으로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
- **추진내용** 세계 최초 배터리를 활용한 케이블 프리(Cablefree) 제트팬 개발 및 실용화
- **추진성과** 독립형 전력공급으로 정전 및 화재 시 차질 없는 제연성능 확보 설치·운영비 획기적 절감(향후 5년간 870억원) 및 터널 제트팬 설치 완료 시기 단축 '30→'27년

#### ▣ 우리가 아는 보통의 제트팬은..?



○ 터널 화재로 전선 훼손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제트팬 미가동  
→ 유독가스 노출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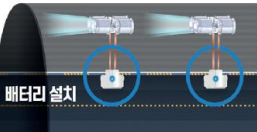
전력공급시설과 전선을 없애, 화재에도 끄떡없는 제트팬을 개발할 순 없을까...?

#### ▣ 기존에 없었던 케이블 프리 제트팬을 만들기까지...

**제트팬에 전기차 배터리를 부착한다면...?**

제트팬 제조업체 +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체 +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 개발·설치 협의체 운영  
○ 터널방재시험장 반복검증  
→ 안정성·호환성 확보



**배터리 설치**

- ✓ (안전) 독립형 전력공급으로 정전·화재 위험요인 완벽 차단
- ✓ (비용) '22년 설치비 16억원 획기적 절감(과전터널 등 4개소)

\* 향후 5년간 전력공급시설 설치비, 운영비 감축으로 870억원 절감(101개소)  
\* 기존 제트팬 1대당 1.7억원 → 케이블프리 제트팬 1대당 1.2억원

※ 출처 : 2022년 정부경영평가보고서(2022, 한국도로공사)

### 3 법 적용 사례

## 1. 도로교량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기상사례)

#### ■ 사고개요

- 지방도 상에 균열이 있던 연장 500m인 도로교량이 붕괴되어, 해당 교량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하여 운전자 1명 사망  
※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A 지자체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범위 붕괴된 교량은 시행령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원인 도로교량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도로 노선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 A 지자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교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제11조)
    - (조사 내용) 안전점검이 적기 이행되지 않아 도로교량의 균열이 보수·보강 등 조치 없이 2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량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은 도로교량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 지자체장은, 관할 도로교량 등에 대해 안전점검의 이행상황을 2년째 보고 받지 않았고, 개선지시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 지자체(기관)에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실시 지연)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 지자체장(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2. 도로터널 내 차량 연쇄 충돌 사고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가상사례)

### ■ 사고개요

- 4차로인 지방도의 터널 내부에서 이용자의 과속 운전으로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재로 일반 시민 2명이 사망
  - ※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B 지자체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미충족**
  - ① **범위** 화재가 발생한 터널은 시행령에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 **원인**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출된 차량 내부의 발화요인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조사(경찰 등)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 공중이용시설인 **도로터널**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II. 철도 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1. 일반사항

#####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터널, 철도교량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이 해당함
- 대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철도차량이 해당함

#####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 ①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조치(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함</li> </ul> </li> </ul>



관계법령	이행사항
「철도건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li> </ul> </li> <li>•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li> </ul> </li> <li>• 긴급점검의 실시(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li> </ul> </li> <li>• 정밀진단의 실시(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li> </ul> </li> </ul>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li> </ul> </li> <li>•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li> </ul> </li> <li>•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li>• 사용제한 등(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li> </ul> </li> <li>•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li> </ul> </li> <li>• 사고조사 등(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li> </ul> </li> </ul>

## ② 철도차량

관계법령	이행사항
「철도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체계 수립(제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소유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소유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38조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소유자는 노후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철도시설, 철도차량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바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철도교량·터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①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철도건설법」(제29조, 제31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별 정기점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시설 (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정기점검	시설별 별도 주기 결정
	정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등급 : 6년마다 1회</li> <li>• B·C 등급 : 5년마다 1회</li> <li>• D·E 등급 : 4년마다 1회</li> </ul>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역사 대합실 및 지하역사에 대하여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시설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건축물 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	• 필요시

## ② 철도차량

### ○ 「철도안전법」(제38조의 12)

- 철도차량 소유자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운행 후 20년 내 1회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4. 안전계획 수립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연 1회 이상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철도안전법」(제6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봄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 기수립·추진 중이던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 >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철도시설 (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ul>

### ■ 경영책임자들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들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들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①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붕괴 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조치 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철도시설 관리자	「철도건설법」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6조)	매년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29조)	시설별 별도 주기 결정
		긴급점검의 실시(제30조)	재난 발생 우려시
		정밀진단의 실시(제31조)	설치 10년 이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주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필요시
		사용제한 등(제21조)	필요시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 등(제46조)	사고발생시

## ② 철도차량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
철도운영자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제7조제1항)	매년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제24조)	5년 단위
철도소유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2)	운행 후 20년

## 6.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중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수토록 해야 함

### ■ 교육 관련 사항

- 「철도안전법」(제24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시행
  -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차량일반</li> <li>• 철도시스템 일반</li> <li>•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중심)</li> <li>• 철도차량 정비 실무</li> <li>• 직무 관련 기타사항 등</li> </ul>	강의 및 실습

※ 출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 <철도안전교육의 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안전 법령 및 안전 관련 규정</li> <li>•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 수행 관련 사항</li> <li>•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li> <li>•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li> <li>•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li> <li>•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li> <li>•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li> </ul>	강의 및 실습

※ 출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 2 철도분야 기관 사례 (국가철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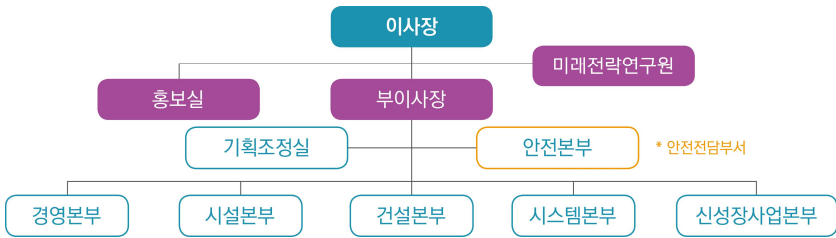
### 1. 기관 현황

####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설립연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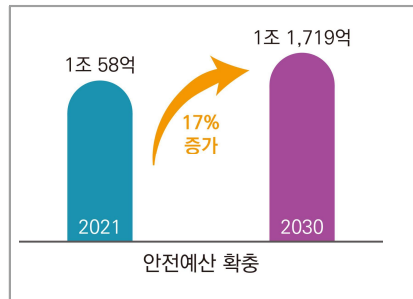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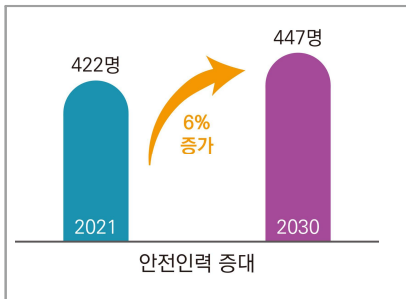
####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본부이며, 부이사장 직속으로 운영



#### ■ 안전인력 및 예산

- 인력인력 안전전담 인력 강화 25명(422명 → 447명)
- 안전예산 안전예산 확충 17%(1조 58억 → 1조 1,719억원)



## 2. 국가철도공단의 재해예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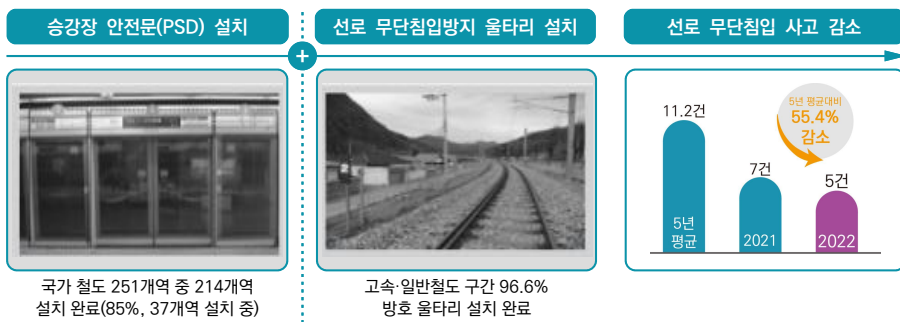
### ■ 사례1: '유비무환' KR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 대비태세 확립

- **추진배경** 자연재해, 화재, 시설물 안전 재해 등의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에 대비를 위한 전사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추진내용**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 구성원 대상으로 숙지하고 재난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 선순환 체계 확립
- **추진성과** 국가 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 실현



### ■ 사례2: 「이용객 - 선로 간 거리두기」로 국민 안전 실현

- **추진배경** 최근 5년간 승강장 추락·선로 무단침입 등으로 국민 안전사고 56건 발생 (연평균 11.2건)
- **추진내용** 국가 철도 251개역 중 214개역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 완료 (85%, 37개역 설치 중) 및 고속·일반철도 구간 96.6% 선로무단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완료
- **추진성과** 선로 무단침입 사고 감소(5년 평균대비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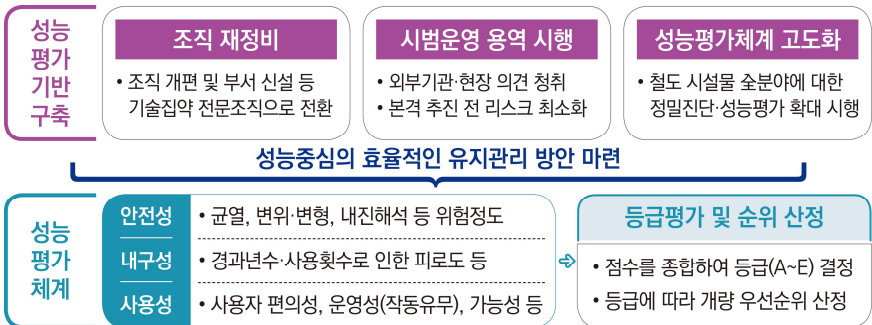
### ■ 사례3: 국민 안심 철도역사 구축

- **추진배경**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 환경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주요 역사에 대하여 비상 시 신속한 대피 지원 가능한 스마트 철도역사 기본설계 완료 및 범죄예방 CCTV 설치로 안전사각지대 제거
- **추진성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 환경 구축

재난예방 스마트 철도역사	범죄예방 범죄 안심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피 안내 →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피 지원</li> <li>• 실시간 관제 → 혼잡도 등 안전 위협요인 자동인식</li> <li>• 서울, 부산, 동대구 등 주요 10개역 기본설계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기법 발굴로 안전사각지대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구역 설정 및 몰카감지기·CCTV·비상벨 등 설치</li> </ul> </li> <li>• 무안공항 지하역사 시범사업 선정·설계 반영</li> </ul>

### ■ 사례4: 철도생애주기 기반 시설물 성능평가 체계 고도화

- **추진배경** 정밀진단·성능평가 대상 확대로 성능 중심의 노후도 관리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내용**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재정비, 성능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성능중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추진성과** 쏘 철도시설물에 대한 성능 중심의 노후도 관리 운영 효율성 제고



### 3 법 적용 사례

#### 1. 역사 천장의 낙하물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가상사례)

##### ■ 사고개요

- 천장 부근 균열(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사 대합실에서, 천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시민 1명 사망
  - ※ (경영책임자) 철도역사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경영 일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거나, 해당 철도역사의 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인력 등 투입 권한이 있는 자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모두 충족
  - ① 범위 철도역사는 시행령에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 원인 철도역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철도역사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 A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역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제24·25조)
    - (조사 내용) 중대한 결함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지 않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철도역사의 안전점검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철도역사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중대한 결함이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 보수·보강 실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공사(기관)에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위험표지 미설치)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공사 사장(개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의무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2. 철도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시민 상해사고 (가상사례)

### ■ 사고개요

-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광역 철도차량의 주요부품이 파손되었는데, 이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음
- ※ (경영책임자)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경영 일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거나,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인력 등 투입 권한이 있는 자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 범위 사고 철도차량은 법률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공공교통수단
  - ② 원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요부품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별도 보수·교체 등 없이 방치하여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철도차량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소유자 등은 철도차량 제작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에 물리적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함(제38조의12)
    - (조사 내용) 법률에 따른 진단을 적기에 받았으며, 주요부품이 파손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종사자나 이용자가 철도 차량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조치요구, 보수·보강 등이 실시되도록 기관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조사 내용)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요부품에 정비나 교체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공공교통수단(철도차량)의 파손 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파손 상황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를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음



### III. 항공 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 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 1. 일반사항

####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등이 해당함
-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송용 항공기가 해당함

#### ■ 의무이행 주체

- **공중이용시설** 공항청사 등에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공중교통수단** 운송용 항공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항공기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공항청사 또는 운송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예방을 위해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여객터미널 및 항공기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 1 여객터미널

관계 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조치(제2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 관리주체는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함</li> </ul>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제한 등(제21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 등(제46조) -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li> </ul>

## 2 운송용 항공기

관계 법령	이행사항
「항공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 의무보고(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실시(제9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 관리지원 등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제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76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위험물취급교육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li> </ul> </li> </ul>

### ■ 경영책임자들의 점검 사항

- ① 여객터미널, 항공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들은 반기 1회 이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여객터미널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① 여객터미널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내지 제13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건축물 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	• 필요시

## ② 운송용 항공기

### ● 「항공안전법」(제90조)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과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동 시스템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공기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관계 법령	점검 사항
「항공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li> <li>-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야 함</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4. 안전계획 수립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연 1회 이상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하는 여객터미널이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들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여객터미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실	안전계획	계획 내용
여객터미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ul>

### ■ 경영책임자들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들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여객터미널, 항공기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① 여객터미널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붕괴 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조치 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필요시
		사용제한 등(제21조)	필요시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 등(제46조)	사고발생시

## ② 운송용 항공기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수립주기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소유주 등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준수(제77조)	상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제2항)	운항시작 전/ 수시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계 유지(제90조)	운항시작 전/ 수시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제32조)	상시
		무선설비의 설치·운용(제51조)	상시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제52조)	상시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제55조)	상시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제56조)	상시
		기장 등의 운항자격(제63조)	상시
		운항관리사 배치(제65조)	상시
		승무원 등의 탑승(제76조)	상시
		승무원 교육(제76조제3항)	매년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제72조)	매년

## 6.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여객터미널, 항공기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 항공 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 승무원에 대해 실시함

### ■ 교육 관련 사항

- 「항공안전법」(제72조) :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항공안전법」(제76조제3항)
  - **교육대상** 항공기에 타는 승무원
  - **교육주기** 최초 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 번 이상 교육훈련 실시
    - ※ 단, 위험물 취급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24개월마다 한 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요 교육내용**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 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해당 항공기에 구비하는 별표 15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비상구·산소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 2 항공분야 기관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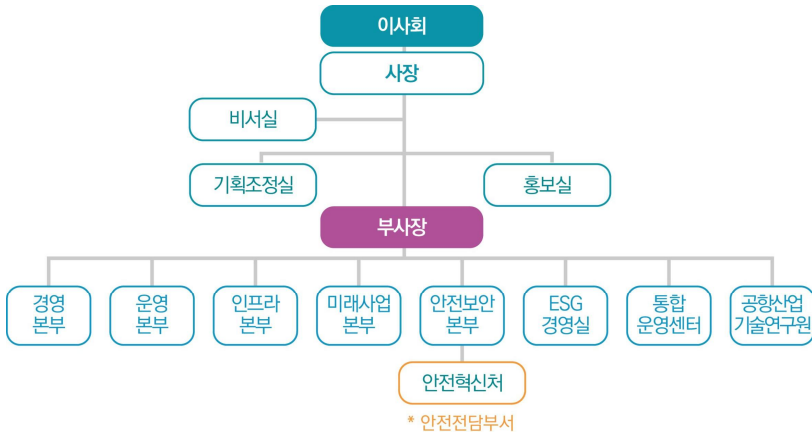
### 1. 기관 현황 ※ 출처 : 안전혁신 우수사례(2021, 인천국제공항)

####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 **설립연도** 1999년

####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부사장 산하 안전보안본부



#### ■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인력** 공항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안본부에는 안전기획·조정, 재난관리, 산업안전, 소방안전, 항공보안, 테러대응 등 안전업무 전담 인력 506명 근무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전공자·경력자를 안전혁신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안전예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을 기준(자회사 근로자 인건비 포함)으로 2021년 6,670억 원, 2022년 7,086억 원, 2023년 7,525억 원으로 매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2. 인천국제공항공사 재해예방 노력

■ 사례: CEO 주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인 국민안심(ANSIM, Airport Non-defect Safe & Innovative Management) 프로그램 마련

- 국민안심(ANSIM)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6개 분야, 348개 안전리스크를 발굴하여 CEO 주관 안전회의를 격주로 시행하여 리스크 집중 논의,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
- 공사는 사장 직속의 안전혁신실을 신설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운영을 개선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대상 수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대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국민안심(ANSIM)프로그램 도입 ▲안전관리 대상별산업안전 프로그램 도입·운영 ▲범공항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신기술 도입을 통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등 공사의 혁신적인 안전활동 추진성과를 우수사례로 발표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 3 항공분야 기관 사례 (대한항공)

#### 1. 대한항공 재해예방 노력 ※ 출처 : ESG 보고서

##### ■ 사례 1: 안전회의체 강화

- 이사회 산하 안전위원회 운영 및 다양한 회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이슈를 관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 체계 유지
- 항공안전보안실장이 주관하고 부문별 안전담당 부서장이 참석하는 ‘안전운항 관리자 회의’를 신설하고, 연 2회 실시되던 사내 최상위 안전회의체인 ‘중앙안전위원회’를 연 4회로 추가 증회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문간 안전 소통을 더욱 확대

#### <안전회의체>



## ■ 사례 2: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교육

- 전 임직원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위험도 관리 및 사례 학습, 안전관리 IT 시스템과 Hazard 보고제도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SMS 담당자, 해외부임 예정자 등을 위한 별도의 안전교육도 실시
- 이외에도 외부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대한항공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소개, Hazard Reporting 제도, SMS Excellence 포상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 사례3: 운항 중 응급의료상황 대응 및 예방 체계

- 운항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적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의사 자문이 가능한 EMCS(Emergency Medical Call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에 심장충격기 등 다양한 비상의료기기 탑재
- 또한 기내 환자승객 발생 시 객실승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실제로 발생하는 환자승객 사례학습과 심폐소생술 훈련 실시
- 아울러 공항에서 환자승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직원에게 질환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환자승객 항공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 4 법 적용 사례

### 1. A항공이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 사고 (가상사례)

#### ■ 사고개요

- A항공이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이용자 1명 사망, 5명 부상  
※ (공중교통수단 소유자) A항공,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A항공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 **범위** 추락한 항공기는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 ② **원인** 항공기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항공안전법) 항공기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 A항공은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 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제58조제2항)  
→ (조사 내용)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가 적기 마련되지 않아 항공기의 기체결함이 보수·보강 등 조치 없이 운항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항공기의 직접적인 추락 원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항공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항공 대표이사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고, 개선지시 등을 일체하지 않아 A항공이** 항공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항공(기업)**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사항(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미조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항공 대표이사(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 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IV. 건축 분야(업무시설 등)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1. 일반사항

#####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등이 해당함

#####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붕괴·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구체적인 사례로, ○○법인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점유하여 ○○법인의 직원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을 하는 등 관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의무 이행의 주체는 ○○법인의 경영책임자임
- 다른 사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임차인의 사업으로 인해 해당 장소·시설·설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보강할 의무를 지는 등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 단, 임대차 계약 관계라고 해서 항상 임차인이 해당 장소·시설·설비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한 공간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여전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인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관계 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조치(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함</li> </ul> </li> </ul>



관계 법령	이행사항
「초고층 재난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재난 및 테러 등 교육·훈련 실시(제14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li> <li>•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제16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및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해야 함</li> <li>• 피난안전구역 설치(제18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함</li> </ul>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li> <li>•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li> <li>•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li>• 사용제한 등(제21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li> <li>•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li> <li>• 사고조사 등(제46조) -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건축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건축물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내지 제13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목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li> <li>•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li> <li>※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주체) 건축물 관리자</li> <li>• (점검시기)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 (점검내용)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li> <li>• (점검방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도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도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li> </ul>

#### ■ 경영책임자들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들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4. 안전계획 수립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 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이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ul>

### ■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의무이행 사항 예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 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제24조)	조치명령 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 등(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	「초고층재난 관리법」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재난 및 테러 등 교육·훈련(제14조)	매년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제16조)	건축시
		피난안전구역 설치(제18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필요시
		사용제한 등(제21조)	필요시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점검결과 통보 시
		사고조사 등(제46조)	사고발생시

## 6.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축 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초고층건축물의 업무시설인 경우,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함

### ■ 교육 관련 사항

- 「초고층재난관리법」(제14조) : 관계인,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교육
  -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관계인 및 상시 근무자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발생 상황 보고·신고 및 전파</li> <li>•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 포함)의 대피 유도</li> <li>•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li> <li>•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li> <li>•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li> <li>•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안전구역의 위치</li> <li>•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의 대피요령</li> <li>•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등</li> </ul>

※ 출처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2 법 적용 사례

### 1. 내화구조부 불법 변경한 업무시설의 화재 사고 (가상사례)

#### ■ 사고개요

- 업무시설(민간, 연면적 3,000㎡ 이상) 내화구조부 불법 수선·변경한 시설 화재로 이용자 2명 사망, 2명 부상  
※ (업무시설 소유자) A회사, (관리자) B회사(「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 A·B회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범위** 업무시설(건축물)은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2)에 따른 공공이용시설
  - ②**원인** 건축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건축물관리법) B회사(관리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등을 건축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 (조사 내용) 업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적기 이행하지 않아 내화구조부 불법 수선·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등 보수·보강 조치 없이 2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회사의 경영책임자인 대표는 제3자(B회사)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 업무시설 정기점검이 수행되도록 했어야 하고(시행령 제9조제3항),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회사 대표는 업무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B회사도** 건축법 기준에 따라 업무시설을 적합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건축물관리자인 B회사(기업)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사항(건축물 유지·관리 미이행)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회사, B회사 대표(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정기점검 미수행, 건축물 유지·관리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V. 기타 분야

### 1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의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이행사항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의 건축주, 건축물 관리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다음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이행사항은 안전관리, 유지·관리, 정기점검, 사고조사 등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정기점검의 실시(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필요시
		사용제한 등(제21조)	필요시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 등(제46조)	사고발생시



## VI. 중대시민재해 사례(위반행위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별 위반내용		
	교량 붕괴	지하철 화재	터널 붕괴/화재
①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수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역사·터널, 차량 내 공간 부재로 사고 발생 원인의 사전 미제거	
②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소화기 위치인식 및 소화장비 부족 등으로 초기 소화 실패	
③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형식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소홀, 일일점검일지 및 안전점검결과통보서 허위작성 및 행사		갱구부 절토사면, 터널 변위부 안전점검 등 실시 미흡
④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 미흡	전동차량내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연소 급속 확대 및 유독성 가스발생으로 인한 시계 판단 불가 및 질식으로 피해 확대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 미흡
⑤ ①~④ 반기 1회이상 직접 점검(OR 점검결과 보고)	용접결함과 제작오차 검사 미흡, 신축이음 장치의 잦은 파손보수 등 구조적 하자로 인한 교량 자체 붕괴 위험성에도 안전진단 미실시 등 도로유지관리상의 과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교행하는 전동차량의 화재현장 진입금지 조치 등 기관사 및 지하철 사령실 초기 대응 미흡	
⑥ ⑤결과에 따라 인력·예산 등 필요한 조치			
⑦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1층시설물 대피훈련 등	중차량 통행방치, 철강재 부식, 부적절한 수직재 고정 및 안전진단 조치 불이행 등 유지 관리상의 과실	피난동선이 길어 유사시 대피시간 지연, 대량발생 연기의 효과적 제어 미흡	비상대피방송, VMS 표출, 제연설비 및 진입차단막 등 터널 방재시설 가동 및 진입차량 차단 등 초기 대응 미흡
⑧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재해예방 필요비용 기준 등			
⑨ 의무이행 여부 연 1회이상 직접 점검(OR 점검결과 보고)			
⑩ ⑨결과에 따라 인력·예산 등 필요한 조치			
⑪ 안전교육 이수여부 연 1회이상 직접 점검(OR 점검결과 보고)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⑫ ⑪결과에 따라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발행일** 2023년 10월  
**기 획**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김상문)  
**제 작** 시설안전과장 문봉섭,  
사무관 주광돈, 주무관 김가현

### 해설서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사무관 주광돈 044-201-4594  
주무관 김가현 044-201-3588

이 가이드라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장 적용시에는 분야별·기관별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